

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26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2. 5. 8
제출자: 김완규의원외 6인

1. 주 문

- 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나. 심사기간은 2002년 5월 14일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7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 음

심 사 계 획

1. 활동 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 사 안 건

-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
-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

3. 활동 기간

- 2002년 5월 14일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- 이경진의원, 강석주의원, 이수현의원, 신교선의원, 김완규의원,
우강호의원, 김진석의원

5. 운영 계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 고
5.14(화)	제1차조례 (13:30)	1.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.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.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4.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.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6.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.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.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	